

다문화사회의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 범죄피해에 대한 취약성을 중심으로*

이수정[†] 이혜선 김연정 명정강명희
경기대학교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은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은 특성상 타인에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주여성들이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는 범죄행위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성범죄와 가정폭력, 살인과 자살의 실태를 알아보았다. 둘째, 해당 범죄들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주의 여성화 추세는 한국사회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의 불안정과 여성으로서 드러내기 어려운 현실이 범죄 피해에 대처할 수 없도록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주여성에 대한 범죄 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주요어 : 다문화 사회, 이주여성, 국제결혼, 성범죄, 가정폭력

* 본 연구는 경기대학교 2007년도 교내 연구소과제의 지원금으로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442-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의동 산 94-6
E-mail : suejung@hanmail.net, Tel : 031) 249-9198,

2008년 3월 10일 (월) 11:31 한겨레

‘베트남 신부’ 숨진 지 한 달 ... 어렵게 한국 온 어머니①

[한겨레] 고개를 젓혀 아파트 14층을 올라다본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저렇게 높은 곳에서 딸이 스스로 몸을 날렸다니 믿을 수 없다”며 영영 울었다.

지난달 6일 숨진 ‘베트남 신부’ 쩐타인란(22)의 어머니 후인킴아인(48)이 지난 7일 딸이 결혼해 살던 경북 경산을 찾았다. 딸을 시집보내고도 찾아와 볼 엄두도 내지 못했던 먼 나라에 왔는데, 정작 딸은 어머니를 맞을 수 없었다. 8일 오후 경산이주노동자센터에서 만난 후인킴아인은 딸의 사진을 끌어보고 또 끌어보며 눈물을 쏟았다.

-
- 1) 최근 국제결혼을 한 베트남 여성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살의 원인을 단순히 한국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결론짓고, 그녀의 가족들의 동의도 없이 시신을 처리한 것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기사화 된 것이다. 이처럼 국제결혼을 하고 국내에서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을 하는 이주여성들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자살의 원인을 단순히 사회부적응이라고 하기에는 감추어져 있는 사실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들 중 심각한 가정폭력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것이 여러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자살은 스스로 선택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자살을 선택하게 된 과정에서 이주여성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범죄피해와 이로 인한 심리적 문제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이를 통해 이주여성들의 자살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딸이 아직 배 속에 있을 때 후인킴아인의 남편은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모녀를 떠났다. 후인킴아인은 떡 장사를 하며 혼자서 딸을 키웠다. 새벽에 일어나 떡을 만들어 팔았지만, 딸을 초등학교조차 졸업시키지 못했다. 늘 빚에 쪼들렸다.

“내가 관절염으로 계속 고생을 하는데 주변에서 한국으로 시집가면 어머니를 편하게 모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듣더니, 딸이 빚을 얻어 호찌민에 있는 결혼중개회사를 찾아갔어요.”

딸은 집에서 300km 떨어진 호찌민의 결혼중개업체에 머물며 한국·중국 남성들과 수도 없이 선을 보다가, 남편인 호(32)씨를 만났다. 선을 본 다음날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식날 중개업체로부터 한국 돈 30만원 정도를 받았다.

지난 1월 중순 딸이 한국에 도착한 이튿날 통화한 게 마지막 대화였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계속 울기만 해서 ‘조금만 참아 보라’고 달랬어요.”

그리고 3주쯤 지나 중개업체로부터 ‘딸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딸의 유골은 위로금 봉투와 함께 택배로 왔다. “‘효녀’라고 칭찬을 받으며 한국으로 시집간 딸이 한달 만에 한 줌 뺏가루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순순히 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어떻게 숨졌는 지라도 알게...”

후인킴아인은 호찌민의 한국대사관과

베트남 외교부를 찾아가 진상을 밝혀 달라고 매달렸다. 베트남 언론들이 앞 다퉈 이 ‘베트남 신부’의 죽음을 전하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베트남 기업인의 도움으로 후인킴아인은 한국행 비행기 표를 구할 수 있었다. 그는 “딸은 숨진 지 이틀 만에 내 동의도 없이 화장됐는데, 베트남 외교부는 2월15일치 공문에서 딸의 주검이 병원에 있다고 했다”며 “딸이 도대체 어떻게 숨졌는 지라도 알고 싶다”고 거듭 말했다.

8일 후인킴아인은 딸의 죽음을 수사하고 있는 경산경찰서를 방문해 수사진행 상황을 설명 듣고, 사위였던 홍씨도 만났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밝힌 대로 “아내가 적응을 잘하지 못해 이혼을 한 뒤 베트남으로 돌려보내려고 비행기 표까지 끊어 줬는데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후인킴아인은 여전히 “왜 딸이 내게 전화 한 통화 없이 자살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후인킴아인은 열흘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베트남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쩌타인란이 왜 숨졌는지, 자살을 했다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또 다른 베트남 신부들은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후인킴아인과 동행하면서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신문> 기자 푸프억행(49)의 말이다.

경산/글·사진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2005년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747,467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1.55%를 차지하다가 2007년 8월말에는 한국 체류 외국인의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던 외국인의 수가 단지 40,920명(총인구의 약 0.09%)이었던 1985년과 비교한다면 이는 엄청난 수치의 증가이며 이 같은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법무부, 2006). 더욱이 국제결혼에 의한 인구의 구성 비율을 보면, 2006년도 한국 내 전체 결혼의 11.9%가 국제결혼이었다. 이런 추세라면 2020년에는 국제결혼 이민자의 2세만 하더라도 167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어, 이 주민과 그들의 가족 구성원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적어도 2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102288631>).

통계청의 ‘2006년도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한국사회의 주요 이주민 집단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 가운데 이주민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응답자들의 30.6%가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꼽았다. 이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대다수가 한국보다 경제적 발전 정도가 낮은 아시아 개도국 출신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하는 상당수 한국인들의 태도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음을 추정케 한다.(김이선, 2007).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차별과 배제는 그들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행위를 조장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들을 범죄행위의 피해 대상화 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다민족·다문화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현재 시점에서 이주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 중

특히 범죄에 대한 취약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유입되는 대표적인 형태는 근로자, 예술홍행인, 국제결혼배우자, 그리고 방문 후 불법체류 등이다. 최근의 이와 같은 입국 형태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들의 섹슈얼리티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분류해보면 첫째, 산업현장에서의 발생하는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 둘째, 허가된 거주기간 이후 불법체류 상태에서 성산업으로 유입될 가능성, 셋째,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 중 일부인 매매혼적 성격의 결혼과 이후의 가정불화 등이다. 이들은 현재 한국에서 갖는 생활형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섹슈얼리티라는 특수한 조건을 매개로 하여 한국의 이주여성으로 정체화되고 있다. 이 같은 이주여성들의 문제는 다양한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化로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이는 동등한 상황에 놓인 남성들과는 다른 환경과 문화에 놓이게 됨을 시사한다(이수자, 2004).

위와 같이 이주여성은 섹슈얼리티라는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인종이나 출신국가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겪어야 하는 차별과 폭력을 부가적으로 더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2003년도 여성단체와 이주여성단체는 42%의 이주여성들이 성희롱을 비롯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시달린다는 조사보고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02년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조사통계에서도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30.4%가 신체를 만지는 폭력을 당했고, 그 중 55.6%가 한국인 직장상사에게 당한 것을 보고하였다(정숙자, 2005).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섹슈얼리티에 기인한 피해경험은 다만

이주여성들 개개인의 문제로만 취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동체 단위의 보호대책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양정화, 2005).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문제제기의 단계를 넘어서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시도가 꼭 달성되어야만 세계인으로서의 한국인의 위상이 공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주여성들이 겪게 되는 범죄피해의 구체적 유형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범죄피해의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할 구체적 대안에 대해 제안코자 한다. 이는 이주 여성의 진정한 사회적응과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주의 여성화

‘이주의 여성화’라는 용어는 전 세계에서 여성이주노동자가 상대적으로 급증하는 현상을 칭한다. ‘지구화와 이주의 여성화, 한국 이주여성의 실태와 과제’(www. w migrant.org)라는 발제 속에서 한국염(정숙자, 2005, 재인용)은 아시아 전역의 해외이주자 중 여성들이 69%이며, 그 원인이 저개발국가의 빈곤과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경제의 불평등 구조에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서는 고용국의 단순직 산업노동과 가사노동, 서비스 분야 노동력 결핍, 저렴한 브로커 비용, 그리고 국제결혼 등이라고 한다.

이주의 여성화 현상은 최근의 국가간 노동이주 양상이 과거처럼 영주이주가 아니라 ‘일시적인 이동’이 되면서, 가족 중 누가 해외에서 일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 즉 해외에서의 취업기회가 있는가와 가족 중 누가 해외에서

더 많이 돈을 모을 수가 있는가를 고려해 즉 ‘가족전략’으로 여성(딸 또는 부인)이 해외취업을 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이다(이혜경, 2005).

이주의 여성화는 송출국의 경제발전 저하, 자국 내 여성지도력의 외국 유출, 그리고 심각한 가족관계와 가족해체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그들의 불안정한 체류자격은 여성이기에 당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계급·인종·성 등의 각종차별, 그리고 저임금과 모성보호 부재 등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한다(정숙자, 2005).

경우에 따라서는 이주여성의 인권까지 고려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이차적인 문제로서 취급되기 쉽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국내여성의 평등권도 달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주여성의 인권문제를 꼭 논의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적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주여성의 인권을 출신국가나 개인의 문제로만 간주할 수 없는 이유는 이주여성화의 추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십년 이내에 이주여성들과 그들의 2세들이 전 인구의 약 10% 정도를 차지할 것이란 절박함 때문이다. 이들과 이들의 가족이 대한민국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 현재 당사자에게만 전가하는 인권침해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양정화, 2005). 예컨대 인종갈등이나 인종 간 충돌이 우리나라라고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으며 더욱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문제를 더 이상 연기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 이주여성을 단지 외국인 여성이라는 배타적인 시각이 아닌 우리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주여성화에 따른 인권보호 제도나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다음 절에서는 따라서 이주여성들이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는 인권침해의 사례들 중 성범죄, 가정폭력, 살인과 더불어 자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주여성들은 직장내 외에서 한국 남성에게 의하여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며, 혼인으로 인해 이주해 온 여성들은 한국인 가정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폭력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이 같은 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최근에는 이주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살인사건도 빈번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다양한 범죄피해 후유증과 사회부적응, 그에 따른 자살의 사례들이 자주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들의 구체적 특징을 조사하여보고, 이들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들을 탐구하여보고자 한다.

이주여성 노동자의 성범죄 피해

이주여성 노동자 현황

우리나라는 그간 제조업 부문으로의 ‘연수생제도’ 및 이의 변형인 ‘연수취업제’란 정책을 고수해왔고, 외국인 근로자의 서비스 업종으로의 취업은 불법이었으므로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표 1은 지난 10여 년간 국내 이주여성의 비율이 30~35% 정도로 매우 안정적임을 보여 준다. 2002년 11월 말부터 취업관리제란 정책으로 외국 국적 동포에게 특정 서비스업 부문이 개방되었음에도 2004년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33%, 이주여성의 수는 약 15만 명으로 양적인 의미에서 이주의 여성화가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이혜경, 2005).

표 1. 국내 외국인 근로자 규모

연도	전문직			생산직				합계
	전문기술 E1~5,7	예술홍행 E6	산업연수 D3	연수후취업 E8	고용허가 E9	취업관리 F-1-4	불법체류	
1993	3,349 (22.6)	418 (37.3)	8,048 (27.7)	-	-	-	54,508 (32.5)	66,323 (31.4)
1994	4,702 (24.4)	563 (37.8)	24,050 (31.3)	-	-	-	48,231 (30.7)	77,546 (30.5)
1995	7,403 (14.8)	553 (33.6)	31,394 (40.5)	-	-	-	83,103 (33.0)	122,453 (33.8)
1996	11,760 (30.5)	931 (44.0)	46,791 (32.4)	-	-	-	129,054 (32.1)	188,536 (32.1)
1997	12,318 (29.5)	1,287 (53.8)	61,416 (30.6)	-	-	-	148,048 (31.9)	223,069 (31.5)
1998	9,438 (26.5)	1,009 (62.1)	41,820 (33.5)	-	-	-	99,537 (34.6)	151,804 (34.0)
1999	9,861 (26.3)	2,077 (75.5)	52,944 (31.5)	-	-	-	135,338 (35.5)	200,220 (34.4)
2000	11,379 (28.8)	3,556 (82.1)	69,492 (29.2)	2,063 (24.2)	-	-	188,995 (36.0)	275,485 (34.5)
2001	13,057 (30.7)	4,360 (84.3)	43,854 (30.4)	8,065 (20.6)	-	-	255,206 (35.9)	324,542 (35.2)
2002	15,906 (32.1)	4,067 (83.0)	33,697 (30.0)	12,191 (22.1)	-	-	289,239 (36.3)	355,100 (35.5)
2003	16,167 (31.0)	2,802 (72.1)	46,594 (22.4)	20,244 (16.1)	159,705 (37.6)	6,964 (47.0)	154,342 (36.0)	406,818 (34.3)
2004	16,939 (32.0)	2,373 (65.8)	32,639 (18.6)	48,937 (13.6)	120,415 (37.7)	19,258 (46.1)	209,073 (35.5)	447,413 (33.0)

이혜경(2005) 인용

그러나 2003년 7월 31일 국회에서 ‘고용허가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2004년 8월부터는 종사자 규모가 300인 미만인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서비스업에서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조선족 등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에 한해 음식, 사업지원, 사회복지, 청소, 간병, 가사 등 서비스 분야 6개 업종이 실질적으로 개방된 것이므로 향후 중국, 러시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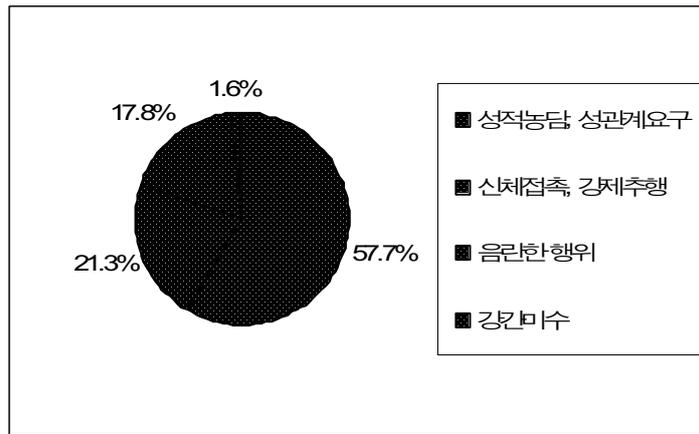


그림 1. 이주여성 노동자가 경험한 성범죄 유형

양아시아 등으로부터 여성 근로자의 유입이 더욱 증가하여 이주의 여성화현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이혜경, 2005).

이렇게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가열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현재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열악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주여성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제조업분야에 종사하며, 저임금과 장시간노동뿐 아니라, 외국인, 여성, 노동자로서의 복합적인 인권침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양정화, 2005).

이주여성 노동자의 성범죄 피해 실태

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조사되었던 범죄피해들 중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성범죄 피해이다. 특히, 이에 대해 조사한 양정화(2005)의 연구에서 한국에서 이주여성들이 겪는 폭행, 성폭력과 성매매 관련 실태를 알아본 결과, 먼저 이주여성의 일반폭행의 경험여부는 42.5%이었으며, 가해자는 72.8%가 한국인으로 나타났다. 성폭

력은 41.7%로, 거의 10명중 4명 정도가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의 빈도는 1-2회 정도가 29.1%, 지속적인 경우가 12.6%로 나타났으며, 직접 경험한 성범죄 유형을 나열하면 성적농담이나 성관계 요구가 57.7%, 신체접촉이나 강제추행이 21.3%, 음란한 행위²⁾ 17.8%, 강간미수 1.6%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

또한, 가해자는 한국인 직장상사 29.2%, 모르는 사람 26.2%, 한국인고용주 13.8%, 한국인 직장동료 12.3%, 모국인 직장동료 1.5%, 제3국인 직장동료 3.1%, 집주인 1.5%, 이웃한국인 6.2%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 발생장소는 직장 내 62.5%, 회식자리 15.6%, 본인의 집 7.8%, 공원 4.7%, 숙박업소 1.6% 등 주로 직장 내와 업무와 관련해서 성폭력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정화, 2005). 즉 가해자의 대부분이 한국인이며, 장소로는 상당부분 직장 내와 직장과 관련된 회식자리 등임을 알

2) 양정화(2005)의 연구에서 음란한 행위는 성기노출, 음란물 보여주기, 음란전화를 말하며, 성적농담은 언어적 희롱, 술 따르기 강요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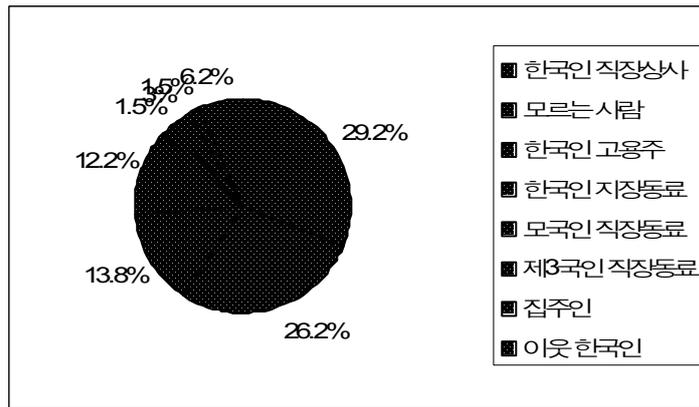


그림 2. 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범죄 가해자 유형

수 있으며, 이는 범죄피해를 당하여도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라 생각된다.

끝으로, 성폭력에 대한 대체로는 이주여성들은 참는 경우가 62.0%로 나타났다. 성폭력을 당한 이후에 그냥 참아 넘기는 경우가 많은 비중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주여성이라는 신분적인 취약성과 의사소통의 문제를 중요한 이유로 들 수 있다. 성매매의 경우 직장상사 32.3%, 한국인 직장동료 12.9%가 성매매 제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매개자보다는 직장내부에서 한국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은 한국사회의 남성중심사회의 성 규범과 보편화된 성 상품화가 이주여성에게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성범죄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사회학습이론

사회학습이론은 인간의 행위는 기쁨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도록 조직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인간의 모든 행위와 그에 따른 정의는 학습된다고 주장한다. 범죄행위 또한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강화를 통해 학습된다. 또한, 사회학습이론은 성범죄자들이 그들이 처한 사회적인 환경 안에서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신조를 배우고 주장한다. 일반인들에 비해서 성범죄자들은 강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더 효과적으로 배우고, 성범죄와 폭력성에 대해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Howitt, 2002)고 알려져 있다.

이주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인 직장상사나 고용주, 직장동료들은 이주여성들이 직장을 이탈하게 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한국에서 그들을 지원해줄 지지체계가 부족하다는 사실로 인해, 이주여성들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피해여성들이 피해 이후에 대부분 참는다는 것을 경험한 가해자들은 반복적인 형태로 이주여성 노동자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다. 즉 가해자들은 범죄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으며, 피해

자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다는 사실이 강화되어, 지속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인지왜곡이론

성범죄를 지향하는 태도나 행동은 다양한 대인관계 속에서 학습되고,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남성-여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성범죄에 대한 신념은 사회화(학교, 가정, 직장 등)되고, 다양한 집단 내에서의 유대감,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강화된다. 특히 강간신화를 강하게 믿고 있는 성범죄들의 경우 불법적인 성행동에 몰두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 행동의 합리화와 정당화를 용이하게 한다(Ellis, 1989).

보편화된 강간신화 중 하나는 바로 ‘여성의 No는 Yes 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Koss & Harvey, 1991). 또 다른 강간신화의 예는 ‘정숙한 여자는 강간당하지 않는다.’ 등이 있으며, 이러한 강간신화는 피해여성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믿는 고정관념을 지속시킨다. 이러한 강간신화는 성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비범죄자인 일반 성인남성과 청소년들도 믿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Burt, 1980, Meuhlenhard & Hollabaugh, 1988). 강간신화는 성범죄자들이 흔히 갖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이주여성들이 자신들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존재이거나 수동적이고 약하다는 잘못된 가설(Bajbhandari, 2005)과 결합하여, 이주여성들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문화이론

Baron과 Straus(1989)는 사회적인 이론에 근

거하여, 나라마다 성범죄 발생률이 다른 세 가지 주요 요소에 대해 조사하였다. 첫 번째는 남녀 불평등(Gender inequality)으로 여성의 경제적인, 법적인, 정치적인 지위를 남성의 지위와 비교하고, 직장 내에서 남성의 평균 수입과 여성의 수입을 비교하는 지표이다. 두 번째는 문화적인 영향(Cultural spillover)으로 ‘합법적인 폭력 지표’라 할 수 있다. 즉, 학교에서의 차별, 살인자에 대한 사형비율 등과 같은 일종의 합법적인 폭력에 대한 수용도를 의미한다. 세 번째는 사회 해체(Social disorganization)로, 사회적인 규칙의 힘이 약해짐에 따라서 사회가 불안정해진 정도를 의미한다. 지리적인 이동, 이혼, 편부모 가정의 증가, 종교에의 귀속 감소 등의 요소들이 이에 해당한다.

위의 조사에서, 남성을 더 선호하는 남녀 불평등적인 사회와 사회적 혼란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더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문화적인 영향보다는 남녀 불평등과 사회 해체가 성범죄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Howitz, 2002).

이러한 사회문화이론을 이주여성의 성범죄 피해에 적용해보면, 이주여성들은 한국남성들에 비해 경제적, 법적, 정치적 지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이동을 하여 한국 사회에 완전한 적응을 하지 못한 상태라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aron과 Straus(1989)가 조사한 성범죄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 중 설명력이 강한 남녀 불평등 요소와 사회해체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성범죄 피해를 겪을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피해

국제결혼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국제결혼 관계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외국인 남성 노동자와 결혼하는 한국여성들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남성들 경우이다. 또 다른 경우는 외국인남성노동자와 외국인여성노동자 간의 결혼이다(한국염, 2005a). 이러한 세 가지 경우 중에서 본 글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는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다.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2005)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로의 혼인이주의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① 아는 사람의 소개, ② 직접 만남, ③ 종교단체, 그리고 ④ 결혼중개업체를 통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① 아는 사람의 소개로 혼인한 경우는 중국동포나 중국한족에게, ② 직접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경우는 중국한족

과 몽골 여성에게, ③ 종교단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주로 일본, 필리핀, 태국 여성에게, 그리고 ④ 결혼중개업체를 통하는 혼인이주는 주로 베트남, 몽골, 구소련 여성에게 많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통계청(2007)의 조사에 따르면, 2006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 39.7천건으로 2000년의 12.3천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2005년의 43.1천건보다는 3.4천건(8.0%)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이는 2006년 ‘방문취업제’ 시행 예고로 향후 중국교포 등의 국내 입국과 취업이 용이해짐에 따라 매년 증가하던 외국인과의 혼인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여자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일본 순이다. 2006년 혼인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 중 41%가 외국 여자와 혼인하였다. 또한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11.5세)가 한국인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2.4세)보다 약 4.8배 높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은 총 30.2천건으로 중국 14.6천건(48.4%), 베트남 10.1천건(33.5%), 일본 1.5천건(4.9%) 순

표 2.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 혼인건수	334,030	320,063	306,573	304,932	310,944	316,375	332,752
외국인과의 혼인	12,319	15,234	15,913	25,658	35,447	43,121	39,690
총혼인건수대비 구성비	3.7	4.8	5.2	8.4	11.4	13.6	11.9
증 감 륜	1,749	2,915	679	9,745	9,789	7,674	-3,431
증 감 륜	16.5	23.7	4.5	61.2	38.2	21.6	-8.0
■ 한국남자+외국여자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증 감 륜	26.5	37.0	10.1	74.4	33.2	21.8	-3.1

통계청(2007)에서 재구성하였음.

으로 나타났다.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실태

맨 앞 장에서 우리는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어떻게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지에 관한 한 예를 살펴보았다. 이 같이 가정폭력이 인명피해에까지 이르게 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심리적 메카니즘이 존재한다. 몇몇 연구들은 매매흔적 성격을 띤 결혼을 한 외국인 여성들은 종종 한국과 문화가 다르고, 가난한 나라의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국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으며 나아가 남성의 성적, 문화적 대상화가 되는 인권유린을 경험한다고 전한다(한국염, 2005b; 김상임, 2005; 문경희, 2006). 또한,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내건 인신매매성 현수막의 광고와 결혼중개업의 중개과정의 한국인들에게 공공연히 알려지면서,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돈주고 사온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특히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들은 자신이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왔다는 생각으로 인해 이주여성을 동등한 배우자로서가 아닌 자신의 부속물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생각은 곧 인권억압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배우자인 이주여성은 인격모독과 폭력, 노동활동 강요와 임금갈취, 신분제에 대한 불안정성 여러 가지 문제상황을 경험하게 되며 결국 인해 인권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한국염, 2005a).

그러나 이와 같은 국제결혼은 ‘사적인’ 일이 아니라 성과 사적 서비스의 다국적 이동의 중심으로 세계화와 ‘신부제’ 사이를 연결하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홍기혜, 2002). 또한 예속적, 종속적인 상황 하에 처하게 되는 국제

결혼은 한국의 뿌리 깊은 가부장제와 맥을 같이 하면서 여성에 대한 배제와 차별성을 내포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예는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남성들은 결혼 적령기를 넘겼거나 결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장애, 농촌총각으로 제한이 없이 다양한 계층을 차지하는 반면에, 상대 여성은 ‘베트남 처녀(아가씨)와 결혼하세요’의 광고에서 알 수 있듯이 순결성이나 나이 어린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다(양정화 2005). 이는 결혼관계가 시작에서부터 이미 불평등한 관계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들의 경험하는 범죄피해 중 외국인 주부에 대한 남편의 폭력 사례(표 3)는 이주여성 단체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이다. 광주여성발전센터의 2002년 10월 조사에 의하면, 광주(55명)와 전남(45명)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부의 30%가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하였다(이혜경, 2005). 또한, 2005년에 발표한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와 2007년에 발표한 여성가족부의 결혼이주여성의 12.3%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 여성들의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경우 2005년에는 하루 2명으로, 2006년에는 하루 3명꼴로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상담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3분의 1정도가 가정폭력이고, 3분의 1정도가 체류문제를 비롯한 생활상담으로 나타났다. 올해에 부쩍 늘어난 사안은 증명하기가 힘든 가정폭력 사안과 물리적인 가정폭력보다 더 무서운 유기부부이었다(한국염, 2005a).

표 3. 가정폭력 사례

구타 후 강제적인 성관계	중국동포 미순(가명, 29세)은 한국인과 결혼한 친척의 소개로 재혼인 한국인 남성(40세)과 결혼하였다. 미순은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나올 것이고, 중국의 가족에게도 도움을 준다고 하여 결혼하게 되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주일 만에 한국에 있는 미순의 친척(사촌동생)을 만나려고 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와서 뺨을 때리고 아무데도 나갈 수 없다면서 전화기 등 가재도구를 미순에게 던지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 술만 먹으면 미순의 목을 조르고 ‘비싼년’, ‘내 뼈골을 빼먹을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구타 후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폭력과 욕설을 하여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운 힘든 생활이어서 지금은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경제적 폭력	중국 조선족인 미화씨는 결혼알선업체의 소개로 규모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남편을 만나 1999년에 결혼하였다. 미화씨는 결혼한 지 4개월 정도가 지나서부터 말대꾸를 한다고 폭력이 시작되어 늘 한국여자처럼 고분고분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 왔다. 특히 남편은 결혼 할 때, 돈이 많이 들었으니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고 한다. 또한 돈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만 필요한 이유와 금액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며, 돈이 필요해도 죽고 싶을 정도로 굴욕적이어서 말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렇다고 수중에 돈이 없으니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한다.
신분에 대한 불안과 관련된 폭력	결혼알선업체의 소개로 중국에서 결혼한 미자(26세)는 특별한 이유 없이 남편이 화를 내고 무엇이든 못마땅하면서, 국적취득을 해주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래서 미자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난감해 하고 한국인으로 아이도 낳고 살아야 하는지 언젠가 남편이 집에서 쫓아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으로 고통스럽다고 한다.

양정화(2005)에서 발췌 후 재구성하였음.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한 박영진(2005)의 연구에서 조사된 이주 여성 전체 190명 중 180명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의 빈도는 한 번의 경우 43.2%, 연 1~12회 미만이 26.3%로 나타났고, 주 7회 이상도 12.1%나 되었다. 폭력의 빈도가 주 7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 이는 곧 매일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혼생활 자체가 폭력적 상황의 경우임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이 가정 내에서 당하는 가정폭력의 피해유형을 보면, 신체적 폭

력인 구타가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정신적 폭력 26.8%, 경제적 학대 18.9%, 성적 학대 9.5%, 기타 8.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동훈 등(2005)의 연구 조사에서는 상당수의 혼인이주여성들이 남편이 물건을 던지거나(23.7%), 세계 밀거나(13.9%), 손발로 구타를 하였다(13.5%)고 하였다(표 4).

이주 여성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농촌 한국 남성들의 구타방법에 있어서, 폭언과 욕설이 29.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물건을 던지거나 협박하기가 16.3%, 강제적 성행위가 15.3%,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기가 14.2%, 그리고 신체적 상해가 13.7%로

표 4. 혼인상태에 따른 부부폭력

	전체 (921)	기혼 (755)	별거 (76)	이혼 (38)	동거 (32)	사별 (20)
모욕적인 말	31.0	24.1	84.2	68.4	22.6	30.0
때리겠다고 위협	18.4	11.1	74.7	50.0	16.1	26.3
물건 던짐	23.7	19.5	60.5	52.6	3.1	20.0
세게 밀기	13.9	7.6	57.6	52.6	6.3	26.3
손발로 구타	13.5	8.1	48.7	57.9	.0	20.0
성행위 강요	14.0	6.9	63.2	47.4	21.9	20.0
변태적인 성행위	9.5	3.4	47.4	42.1	15.6	2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24.859, p<.000$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혜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2005)

나타났다(박영진, 2005). 조사결과에서 폭언과 욕설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 한국 언어가 익숙하지 않아 의사소통 힘든 이주여성들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 뿐 아니라, 흉기로 위협을 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들은 심리적으로도 매우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남편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자식을 빼앗길까봐가 31.1%로 가장 많았고, 모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서 26.8%, 언젠가는 나아지리라는 희망 때문 16.3%, 가족이나 친척의 만류로 11.1%의 순으로 응답했다(박영진, 2005). 또한, 이주 여성이 쉽게 이혼할 수 없는 이유로는, 만일 이혼을 하게 되면 국적취득의 보장이 어렵거나, 집에서 쫓겨날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로 전락되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Madiguid, 2005). 이처럼 심각한 가정폭

력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주여성들에게 가정폭력보다 더 무서운 상황인 자식을 빼앗기거나,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가나 모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주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권위적인 성역할 태도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다. 가해자는 보수적이며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 가부장적 태도를 지닐수록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 연구들(Rosenbaum & O'Leary, 1981; Martin, 1986; Morrison, 1997)에서 가정폭력 행위자들이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폭력남편들이 아내의 독립적인 결정

을 허용하지 않으며 가정생활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는 경향성을 발견하였다.

Yllo와 Straus(1992)는 남성 우월적인 권위의식이 강할수록 아내를 구타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했다. 즉,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은 실제로 권위를 잃었거나 또는 권위를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다. Dobash와 Dobash(1998)는 가정폭력 가해남성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흔히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은 여자인 아내가 제시하는 자기 주장이나 논쟁을 잠재우기 위해 유용한 도구로 폭력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의 상당 부분이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를 지닌 남편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국제결혼을 한 남성들 중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아내와의 나이차이가 평균 11세 이상 나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경우가 많거나, 경제적, 사회적으로 아내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보다 더 권위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극심한 질투나 편집증

가정폭력 행위자들의 높은 질투심은 쉽거나 상담기관 등에서 드물지 않게 관찰된다. 임상적 보고들(Bowlby, 1984; Saunders, 1984)은 이들의 아내에 대한 질투심과 소유욕은 매우 강하며, 그로 인해 피해여성들이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고립되어 간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편집증이다. 아내의 부정을 비난하면서 폭력이 시작되고 관계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통제하려 한다.

한국염(2005)에 의하면, 이주여성을 지원하

는 센터에 상담을 하러온 이주 여성들의 상담 내용상 많은 한국 남편들이 의치증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국제결혼을 한 한국 남편들은 대부분 생활기반이 약하고, 아내와의 나이차이가 많다 보니 젊은 아내들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들의 의치증적 증세에는 자기 부인이 돈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고, 자기와는 위장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도망갈 것이라는 의혹이 깔려있으며, 이러한 의혹이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권력과 통제에 대한 과도한 욕구

가해자는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배력과 통제력을 가지려하며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떠한 태도도 용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남자는 ‘책임은 저야만 한다’는 강한 신념을 지닌 남성들은 그들의 배우자에 대하여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여성의 행동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극단적인 질투는 심각한 학대와 연관된다(Richards, 2001; Campbell, 1986).

매매혼의 성격을 띤 국제결혼은 아내의 역할을 수행할 여성에게 비용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여성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통제의 수단으로서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또한, 부부사이의 강제적인 성관계는 한국사회에서 남녀간, 특히 부부간의 비대칭적인 관계에서 성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역시 성적판타지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박영진, 2005).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 이외에도 이주여성들은 국제결혼이라는 독특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에 대한 왜곡되고 경직된 사

고, 극심한 질투나 편집증, 권력과 통제에 대한 과도한 욕구 등 역시 그 원인으로 작용되는 것은 물론이며, 그 외에도 박영진(2005)의 연구에서 나타난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을 촉발시키는 주요 요인인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생활비 요구(23.7%), 남편의 음주 (16.3%), 말을 못 알아들어서(8.4%), 남편의 외도 (5.8%) 등도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가정 폭력은 특정한 하나의 이유만으로 발생한다기 보다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유도 없이 가정 폭력을 당했다는 응답도 13.2%로 나타나(박영진, 2005), 이는 아내가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해 막막함과 우울함을 느끼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주여성들에 대한 살인범죄와 그들의 자살

이주여성에 대한 살인범죄

국제결혼과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국내 유입이 활발해지면서, 신문기사나 TV 프로그램을 통해 드물지 않게 등장하는 뉴스 중 하나가 이주 여성들의 자살 사건이나, 살인 사건이다. 다음의 한 사례는 이주여성 노동자였던 리아가 애인이었던 한국인 유부남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에 대한 것이다.

10월 20일 새벽, 리아는 공장기숙사 옥상에서 애인이었던 한국인 남성 비 아무개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한 뒤6일간 사경을 헤매다 숨졌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알게 된 비 아무

개는 이 사건을 우발적인 것이라 말하고 있으며,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 때문에 몇 번 발길질을 했더니 그렇게 되었고 자신은 정말 리아를 사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동료들은 비 아무개가 리아를 성적 노리개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데다 실제로 그는 유부남이었다

살인 범죄에 있어서 그 동기는 도구적(instrumental) 동기와 표출적(expressive) 동기로 구분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이수정, 2006). 도구적 동기들은 미래에 분명한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고, 반면에 표출적 동기들은 종종 화, 분노, 욕구불만으로 인한 계획되지 않은 행동들이다(Block & Christakos, 1995; Siegel, 1998).

이러한 동기 상의 구분을 살인 연구에 적용하면, 특정한 상황들과 자극들은 도구적 동기나 표출적 동기로 분류될 수 있는데, 논쟁, 말다툼, 낭만적 삼각관계, 사춘기적 집단, 다른 대인간의 논쟁은 전형적으로 표출적인 행동들로 분류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주된 자극은 폭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Polk, 1994). 따라서 대체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는 도구적인 동기보다는 표출적인 동기로 볼 수 있겠다.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살인범죄의 경우 안면이 없는 낯선 사람인 경우보다는 주로 남편이나 애인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며, 위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피해자는 심하게 구타를 당하였고, 가해자는 우발적이었으며, 감정이 상하였기 때문에 구타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이란주(2002). 꽃도 십자가도 없어라: 어느 여성 이주노동자의 죽음에서 인용한 사례.

이주여성의 자살

자살의 주요 동기를 ‘세 가지 문의 법칙’으로 설명하면, 비상구, 출구, 입구가 될 수 있다고 한다(Blocher, 1986). 자살은 종종 고통이나 실패(오래 쌓인 원인, 권태 등) 혹은 실제적, 가상적인 죄책감으로부터의 도피이며, 자기 자신에만 빠져 있는 전쟁상태로, 견딜 수 없고,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버리는 것이다. 이 때 죽음은 ‘비상구’로 부각되며, 자살자들은 죽음을 이생으로부터 도피로 여긴다. 둘째, ‘출구’는 좀 더 직접적인 것으로 죽음을

생명의 파괴로 여긴다. 어떤 주체의 공격성이 자신을 향하게 될 때 자살은 일종의 복수가 되어 버린다. 이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자신에게 향한 공격성의 극단적인 결과를 자살로 간주한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죽음이 무생명, 무존재, 무가치한 것이기를 소망할 때 자살은 그 ‘입구’가 된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둘러싼 공허를 느끼며, 자기 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자신을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므로 고독감은 증대된다. 허무감은 인간 존재의 혐오 때문에 생기기도 하며, 자살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표 5. 이주여성의 자살 사례

사례 1.

2007년 11월 중국에서 시집은 김모씨는 스스로 삶의 끈을 놓았다. 남편의 잦은 폭행과 시어머니의 구박에 견디다 못한 그녀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땅을 밟은 지 꼭 4개월 만이다. 그녀를 보살폈던 결혼이주여성지원센터 한 관계자는 "한번은 남편한테 맞아 코뼈가 부러졌으며 찾아왔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며 "한 달 동안 그를 보호해 줬는데도 결국 죽음을 택했다"고 했다(매일신문, 2008년 2월 19일).

사례 2.

2004년 4월27일, 대구에서 34살의 중국 여성 이주 노동자가 달리는 지하철에 몸을 던져 삶을 마감했다.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나 회사 사장님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가서도 해결 못했어. 외국인도 사람입니다. 왜 일을 했는데 사장은 돈을 안 주는 건가요. 나는 돈이 없어 집에 못 갑니다. 방법이 없어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중국 랴오닝 출신으로 중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 ‘코리아드림’을 가지고 한국 땅을 밟은 지 4년 만에 위와 같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그녀의 사후 이루어진 조사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의 비인간적인 노동과 삶의 조건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그녀는 2003년 11월, 기계자수를 주로 하는 대구지역의 한 가내 수공업체에 취직하여, 주간에는 12시간, 야간에는 13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월 임금은 80만원, 그나마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고인은 2004년 1월 회사를 그만두고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회사 사장의 협박과 만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며 괴로워하다가, 달리는 지하철에 몸을 던진 것이다 (한겨레 칼럼, 2004년 6월 9일).

사례 3.

몇 해 전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에서는 한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이 출근한 사이 결혼 생활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에서 탈출하려다 떨어져 숨졌다. 아파트 9층 발코니에 커튼을 묶어 타고 내려오다 떨어져 숨진 충격적인 사건을 두고 한국은 물론, 베트남 현지까지 떠들썩했다(매일신문, 2008년 2월 19일).

(조용기, 2002).

자살을 선택한 이주여성들은 표 5에서 나타
나듯이, 대체로 자신의 현 상황을 견디지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력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주 여성들이 당하는 폭력의 후유증으
로는 모욕감이 28.9%로 가장 심하고, 다음으
로는 우울증이 26.8%, 자신감상실이 21.1%, 좌
절 9.5%, 불안초조 7.4%, 기타 6.3%로 나타났
다(박영진, 2005). 따라서 이주 여성들의 자살
동기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문 중 ‘비상구’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주여성들은
계속되어지는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직장생활
또는 가정환경, 불평등한 한국 사회 내에서의
자신들의 위치, 사회적 부적응 등으로 인해
겪게 된 만성적인 고통으로부터의 탈출로서
자살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다.

논 의

이주여성들은 한국에 노동자의 형태로, 국
제결혼의 형태 등으로 유입되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다
양한 문화와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는 것임
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아직은 체류 외국인
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만연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주여성들에 대한 불평등과
성 상품화 등의 문제점들은 이주여성들을 다
양한 범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이들이 겪게 되는 범죄피해의 실태
와 원인에 대해 이론적으로 탐색해 보았다.

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의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하위주체로서 생활하고 있

다. 직장 내에서 직장 상사, 동료 등으로부터
의 성범죄를 경험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불
법 체류자 신분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
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들은 남편으로부터의
폭력과 의심 등의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도
이혼 후에 자식을 빼앗기거나, 모국으로 돌아
가기 어렵거나,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될 것을
염려하여, 참고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
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
국인 남성에게 죽음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
을 끊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주여성에 대한 범죄들은 여성, 특히 이주
여성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나 남성들에 비해
경제적, 법적 지위가 낮은 이주여성들의 사회
적 위치로 인해 보다 쉽게 나타난다. 또한, 한
국인 남편들은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성역할
태도와 나이 어린 아내에 대한 과도한 권력과
통제의 욕구 등으로 인해 반복적인 폭력을 행
사하게 되고, 이러한 폭력이 심화되어 살인이
라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신체
적, 정신적 상처를 입은 이주여성들은 심리적
으로 불안정하고, 무력감을 느끼며, 자신감상
실 등을 느끼게 되고,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
는 욕구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이다.

국제결혼을 통해서, 혹은 노동자의 신분으
로 한국에 유입된 이주여성들은 한국에 살기
위해 온 여성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위와
같은 범죄 행위의 조용한 피해자로서 한국문
화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문화와 더불어 보다 행복한 한국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주여성들을 고용하거나, 국제결혼을
하는 남성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주여

성들이 자신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교육시켜야 하는 것이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뿐 아니라, 한국인 부부사이에서도 여전히 부부관계를 종속적인 관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본 글에서 언급한 다양한 상황들을 속에 있는 이주여성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남성들에게는 국제결혼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의 하나로서 교육을 이수과정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둘째, 이주여성들에게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필요한데, 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이 좋은 예가 되겠다. 이 때, 센터 등에서는 인권침해적 피해를 당한 경우 법률적인 지원은 물론, 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찾아오는 피해자 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이주여성 피해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 하며,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홍보 역시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이주여성들에게는 낯선 환경,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놓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 교육, 문화 습득을 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여 함께 융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이주여성들이 범죄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각종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사법기관 및 출입국 사무소 등 관련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하여야 한다. 형사사법기관들의 근무자들이 기존에 이주여성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으로 인해 적절한 관리 및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주여성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 하는 것이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한계와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주여성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실태조사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이주여성들의 고단한 삶을 조명해보고, 그들을 돕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요한 주제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국에서 이주여성들에 대한 기존의 실태연구들을 바탕으로 이주여성들에게 행해지는 행위들이 ‘범죄’라는 인식하에 그 범죄행위의 원인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문헌연구라는 한계로 인해 각 범죄행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보다는 개괄적인 수준의 분석을 한 것이 본 연구의 미흡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주여성들에게 행해지는 범죄행위들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심리도구들을 활용하는 한편, 심층적인 인터뷰를 직접 실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임 (2005). 상담사례를 통해 본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 3주년 기념심포지엄 발표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김이선 (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를 향한 길 위에 선 한국사회를 진단한다. 젠더리뷰, 2007년 여름호, 112-114.
- 문경희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현상. 21세기정치학회보, 16(3), 67-93.

- 박영진 (2005). 농촌 이주 여성의 가정폭력 실태 분석 및 해결방안. 대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법무부 (2006). 출입국관리통계연보.
-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혜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 국제 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양정화 (2005). 이주여성의 차별과 폭력경험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란주 (2002). 꽃도 십자가도 없어라: 어느 여성 이주노동자의 죽음. *중등우리교육*, 130, 28-29.
- 이문숙 (2005).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 아시아이주여성국제포럼 자료집.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이효민 (2007). 다인종·다문화 시대와 경찰활동 변화의 모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7(9). 148-155.
- 이혜경 (2005).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의 인권. 아시아이주여성국제포럼 자료집.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조용기 (2002). 자살에 대한 원인분석과 목회적 접근 방안.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07). 2006년 혼인통계 결과. 보도자료.
- 홍기혜 (2002).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염 (2005a). 국제결혼 영역에서의 이주여성. 아시아이주여성국제포럼 자료집.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한국염 (2005b).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3주년 기념심포지엄 발표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Bajbhandari, R. (2005). 이주과정에서의 인신매매: 현실과 과제. 아시아이주여성국제포럼 자료집.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Baron, L. & Straus, M. (1989). *Four Theories of Rape: A State Level Analysi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Blocher, H. (1986). 자살.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6-7,
- Block, C. R. & Christakos, A. (1995). Intimate partner homicide in Chicago over 29 years. *Crime and Delinquency*, 41(4), 496-526.
- Bowlby, J. (1984). Violence in the Family as a Disorder of the Attachment and Caregiving System. *American Journal of Psychoanalysis*, 44, 9-27.
- Burt, M.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217-230.
- Campbell, J, C. (1986). Assessing the risk of homicide for battered women.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4), 36-51.
- Dobash, R. E., & Dobash, R. P. (1998). Violent Men and Violent Context, In *Rethinking Violence against Women*, R. E. Dobash & R. P. Dobash, (Eds.), Sage Publications, 141-163.
- Ellis, D. (1989). *Theories of Rape: Inquiries into the Causes of Sexual Aggression*, New York: Lexington.
- Howitt, D. (2002). *Forensic and Criminal Psychology*. Harlow: Pearson Education.
- Koss, M. P. & Harvey, M. R. (1991). *The rape victim: Clinical and community interventions*(2nd

-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 Madiguid, M. (2005). 국제결혼한 필리핀 여성들. 아시아이주여성국제포럼 자료집.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Martin, G. L. (1986). *Counseling for Family Violence and Abuse*, 4. Resource for Christian Counseling Series.
- Meuhlenhard, C. L. & Hollabaugh, L. C. (1988). Do women sometimes say no when they mean yes? the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women's token resistance to sex.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72-879.
- Morrison, K. M. (1997). *A Survey of Massachusetts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s Predicting Treatment Completion*. Ph. D Dissertation. antioch New England Graduate School.
- Polk (1997). A re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victim-precipitated homicide. *Homicide Studies*, 1(2).
- Richards, L. (2001). *Domestic Violence Sexual Offenders*. Unpublished.
- Rosenbaum, A., & O'Leary, K. D. (1981). Marital Violence: Characteristics of Abusive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1), 663-671.
- Saunders, D. G. (1984). Helping Husbands Cope with Batterer. *Social Casework*. 65(6), 347-353.
- Siegel, D. A. (1998). Resource competition in a discrete environment: Why are plankton distributions paradoxical? *Limnology and Oceanography*, 43, 1133-1146.
- Yllo, K. A. & Straus, M. A. (1992). Patriarchy and Violence Against Wives: The Impact of Structural and Normative Factors, In M. A. Straus & R. J. Gelles (Eds.),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383-399.

1차 원고접수: 2008. 03. 01

심사통과접수: 2008. 03. 10

최종원고접수: 2008. 03. 24

A Study on Female Immigrants in Multicultural Societies: Focusing on the vulnerability to criminal conducts

Soo Jung Lee Hye Sun Lee Yeon Jung Kim Jung Myung Myung Hee Kang

Kyonggi University

The female immigrants in Korea are known to get exposed to various criminal conducts as well as racial discrimination. Nevertheless, many of criminal cases against migrant women are often concealed to the public and become tardy cases under police investigation. This study reviewed examples of victimization of immigrant women and how vulnerable they could be to various types of crime. First, actual profiles of migrant women were observed of sex offenses, violent crime, homicide, and suicide. Second, theories were explored to explain the causes of these criminal cases. At last, it was discussed the unstable condition of the status of migrant women might aggregate the possibility of their being criminally victimized. Hence, it must be necessary to develop a unique policy to prevent migrant women from crime.

Key words : Multicultural Society; Female Immigrant ; Marriage-related migration; Sex offense; Domestic violence